

# 新羅時代의 頭品身分\*

李 鍾 旭

- |                  |               |
|------------------|---------------|
| I. 머리말           | IV. 頭品身分層의 活動 |
| II. 頭品身分의 起源과 編成 | V. 頭品身分制의 變動  |
| III. 頭品身分의 維持    | VI. 맺음말       |

## I. 머리말

「三國史記」 33, 雜志 2의 色服·車騎·器用·屋舍條를 보면 신라골품제가 眞骨·6頭品·5頭品·4頭品·平人(百姓)의 5개 신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분구성은 興德王 9년(834)에 내려진 王命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위의 5개 신분층은 신라하대 興德王 당시 신분층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그것도 王京人의 신분에 한하고 있다. 원래 신라골품제는 法興王 7년(520)에 반포된 율령에 의하여 공식적 신분제로 편제되었다고 해야려진다.<sup>1)</sup> 당시 골품제는 聖骨·眞骨의 骨身分과 6頭品에서 1頭品까지의 頭品身分으로 차여져 있었다. 그후 신라중고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眞德王이 세상을 떠나자 성골신분은 소멸이 되었다. 또한 3두품·2두품·1두품도 그 시기는 잘 알 수 없으나 언제인가 平人(百姓)身分으로 합쳐지게 되어 이후 신라 왕경인의 신분은 위에 언급한 5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 본 연구는 西江大學校 學內 研究費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抽稿, “新羅 中古時代의 骨品制”, 「歷史學報」 99·100 合輯, 1983, p. 37.

필자는 이미 聖骨과 眞骨身分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다.<sup>2)</sup> 이에 여기서는 骨身分 밑의 6頭品·5頭品·4頭品の 頭品身分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두품신분에 대한 연구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두품신분만을 따로 다루지는 않았다. 단지 李基白의 6頭品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sup>3)</sup> 특히 그와 같은 연구에 의하여 골품제 하에서 6두품이 차지하는 위치, 그 가문, 6姓과의 관계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런데 5두품·4두품 신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6두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5두품·4두품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頭品身分은 신라최고 신분이었던 骨身分과 일반민이었던 平人(百姓)身分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중간 지배신분층이었다. 물론 두품신분이 6두품·5두품·4두품으로 나뉘고 6두품은 5두품보다, 5두품은 4두품보다 신분적 지위가 높았음이 분명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중간지배층으로서 동질성도 없지는 않았다. 따라서 6두품과 5두품·4두품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사료가 부족한 5두품·4두품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6두품·5두품·4두품의 신분적 특성과 그 차이점도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라시대 두품신분의 기원과 편성에 대하여 먼저 정리하고 이어 그 신분의식과 유지에 대하여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두품신분별 활동에 대하여 해명하고 끝으로 두품신분의 변동에 대한 문제를 밝혀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신라 골품제, 나아가 사회체제에 대한 이해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拙稿, “新羅 中古時代의 聖骨”, 『震檀學報』 50, 1980.

拙稿, “新羅時代의 眞骨”, 『東亞研究』 6, 1985.

3) 李基白, “新羅 六頭品 研究”, 『省谷論叢』 2, 1971;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 II. 頭品身分의 起源과 編成

法興王 7년(520)에 반포되었던 律令안에 骨品身分制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그 안에 頭品身分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믿어진다.<sup>4)</sup> 여기서 당시 頭品身分은 어떠한 세력을 중심으로 편제되었을까 알아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몇개의 계통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六部 土着勢力集團의 존재를 주목할 수 있다.<sup>5)</sup> 斯盧國 형성이전 斯盧 六村에는 자기 촌장이 있어 촌 전체의 氏族集團을 다스려 나갔다. 그리고 각 촌에는 다시 세분된 영역이 있었고, 그 안에는 촌의 씨족집단이 나뉘어진 家系集團이 살고 있었다.<sup>6)</sup> 이와 같은 六村은 초기국가로서의 사로국 건국후 六部로 되었으며 그러한 개편 후에도 6촌의 구조는 명백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것은 慈悲王 12년(469)에 6부안의 坊·里名을 정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sup>7)</sup> 당시 편성된 왕경의 지방행정구역은 部·里·坊의 3단계로 짜여졌다고 헤아려진다. 이와 같은 部·里·坊에는 자기 등급을 달리하는 토착세력들이 존재하였다.<sup>8)</sup> 그중 部の 토착세력으로는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나오는 牟梁部の 幢典 阿淪 益宣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다.<sup>9)</sup> 그밖에 里와 坊의 토착세력가들이 존재하였다고 여겨지나, 그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에 史書에서는 그 존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더라도 部·里·坊은 두품신분 편성의 기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종래 사로 6촌 각급세력의 후손으로 6부의 세력가들에게는 6 두품신분까지 주어졌고, 里의 세력가들에게는 5 두품신분까지 주어졌으며

4) 拙稿, 앞의 논문, 1983, pp.33~37.

5) 李基白, 앞의 책, 1974, p.57.

6) 拙著, 「新羅國家形成史研究」, 1982, p.38.

7) 「三國史記」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2년 春正月條.

8) 拙稿, “新羅骨品制의 起源”, 「東方學志」30, 1982, pp.153~164.

9) 「三國遺事」2, 紀異2, 孝昭王代 竹旨郎條.

그 밑에 편제된 坊의 세력가들에게는 4 두품신분까지 주어졌 것으로 짐작이 간다.<sup>10)</sup> 이로써 골품제 편성시 王京人 중 왕족인 金氏族, 전왕족인 朴氏族을 제외한 원래 사로지역의 토착세력들이 두품신분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部·里·坊의 토착세력가들로서 두품신분으로 편제되었던 이들 집단은 주로 部·里·坊의 지방통치 임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자연 그들은 중앙정부에 진출하였던 세력들과는 그 임무가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의 국가통치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두한 세력집단과 그들에 대한 신분편제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沾解尼師今 5년(251) 南堂에서 聽政을 할 때 등용되었던 夫道를 주목할 수 있다.<sup>11)</sup> 夫道는 漢祗(韓歧)部人으로 집이 가난하였으나 아침을 하지 않았고 晝算을 잘하여 당시 널리 알려졌기에 왕이 그를 불러 阿漚으로 삼고 物藏庫의 사무를 맡겼다고 한다.<sup>12)</sup> 기록대로 한다면 夫道는 漢祗部の 세력가는 아니었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그에게는 국가통치업무 특히 재정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었기에 등용이 되었다. 여기서 국가통치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들을 중앙정부의 관리로 등용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신라가 辰韓小國들이나 加耶諸國을 복속하는 과정에 더욱 증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영토와 늘어나는 주민들에 대한 통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麻立干時代に 들어서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麻立干時代に 大等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운용되었으며 이들 집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法興王이 율령을 반포할 때는 일정한 세력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신라에는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관리집단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축성 등을 위한 각종 기술자집단 또

10) 拙稿, 앞의 논문, 1982, pp. 158~160.

11) 「三國史記」2, 新羅本紀 2, 沾解尼師今 5년조 참조.

12) 당시 夫道에게 주어졌던 阿漚은 관동이기 보다 관직적인 성격이 컸다고 해야겠다.

는 궁중이나 왕 또는 귀족들을 위한 잡일을 처리하기 위한 집단도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집단은 정치적 집단이기보다 사회적 집단이라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sup>13)</sup>

이와 같은 정치적 집단과 사회적 집단은 주로 왕경인 중에서 나왔다고 짐작이 간다. 물론 強首는 中原京人이지만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활약한 바 있다.<sup>14)</sup> 따라서 小京人 중에도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중앙정계에 등용 것을 알 수 있다. 여하튼 그들 중에는 왕경 6부와 그 밑의 里와 坊에 거주하던 자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회·정치적 신분 집단에 속한 자들은 일찌기 관등·관직·관부가 설치되는 과정에 점차 공식적인 신분집단으로 편성되어 나갔다. 그리고 율령반포시에 이르러 담당 업무의 중요성 등에 의하여 이들 집단에 대한 두품신분 안에서의 서열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신라 中古時代에는 보다 많은 관직·관부가 설치되면서 정치적 집단의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아울러 中古時代에는 사회적 집단도 크게 증가했다고 헤아려진다. 이들 집단은 일정한 직과 업무를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경향이 컸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중고시대에는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였던 화랑제도가 설치·운용되었다. 화랑제도는 일찌기 설치·운동되어 그 훈련과정에 사람됨을 가려내어 훌륭한 자를 뽑아 조정에 추천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보면 화랑제도는 신라중고시대에 인재의 등용을 위한 장치로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등용되던 세력집단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眞興王 6년(545) 伊淦 異斯夫는 국왕에게 國史를 편찬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다. 이에 眞興王은 大阿淦 居柒夫 등 文士를 널리 모집하여 國史를 修撰했다고 한다. 당시 동원되었던 文士集團에는 진골신분을 가졌던 居柒夫도 있었으나, 나머지는 주로 두품귀족 출신의 문사들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여

13) 川前里畫石이나 南山新城碑 등에 그와 같은 예가 있다.

14) 「三國史記」 46, 列傳 6, 強首條 참조.

기서 문사들을 배출한 사회·정치적 집단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그후 神文王 2년(682)에는 國學이 설치되어 유교적 이념으로 이들 신분집단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신라의 사회·정치적 신분집단의 폭은 크게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골품신분집단에 속한 자들 중에는 신라가 복속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피정복국의 지배세력으로서 왕경에 사민되었던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 이와 관련시켜 우선 기원 1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었다고 믿어지는 辰韓小國 복속시 그 피복속소국의 주민들을 어떻게 조치하였을까 보기로 한다. 사로국은 이미 脫解王(57~80), 婆娑王(80~112)부터 주변의 소국들에 대한 복속사업을 시작하였다.<sup>15)</sup> 그와 같은 복속결과 피복속국의 일반민들은 대체로 그들의 거주지에 계속 머물러 살았음에 틀림없다. 물론 그들 중에 반란을 일으킨 집단이 있으면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사민시킨 일은 있었다.<sup>16)</sup>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일이었을 뿐이다. 그에 비해 피복속국의 최고지배자들은 대체로 왕경으로 사민되었다고 믿어진다. 그것은 助賁尼師今 7년(236) 骨伐國의 왕이었던 阿音夫가 무리를 거느리고 來降하여 왔을 때 第宅과 田莊을 주어 편안히 살게했던 점으로 알 수 있다.<sup>17)</sup>

骨伐國의 왕이었던 阿音夫가 거느렸던 무리는 일반 촌락민이기보다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에 한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들이 항복한 후 거주한 곳은 다름아니라 王京이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골품제가 편성되기 이전이었다. 따라서 이들 피복속국의 왕과 그 무리들을 어떤 신분으로 편제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왕경인 대우를 해주었고 경우에 따라 6부거주 일반귀족 정도의 신분적 대우도 해주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렇더라도 이들은 후일 진골귀족의 모체가 될 정도의 신분적 대우는 받을 수 없었다고 헤아려진다.

15) 拙著, 앞의 책, 1982, pp. 82~87.

16) 「三國史記」1, 新羅本紀 1, 婆娑尼師今 25년조 참조.

17) 「三國史記」2, 新羅本紀 2, 助賁尼師今 7년조 참조.

그후 百濟인들이 신라에 항복하여 온 일도 있다. 즉 奈勿王 18년(374) 百濟의 禿山城主가 300 인을 거느리고 來投하였는데, 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6 부에 分居토록 한 바 있다.<sup>18)</sup>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來投한 百濟인들이 어떠한 신분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왕경 6 부에 살게된 백제인들은 왕경인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후일 골품제 편성시 이들의 후에 들어 일정한 신분으로 편제 되었으리라는 점만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sup>19)</sup>

지금까지는 신라골품제 편성 이전의 사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이제 法興王 7년 율령을 반포하여 골품제를 정한 이후 신라에 병합된 나라의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보기로 한다. 신라는 法興王 이후 加耶의 여러 나라를 병합한 바 있다. 이때 피정복 加耶 여러나라 국민에 대한 신분편제는 어떠한가. 여기서 法興王 19년(532)에 來降하였던 金官國(大加耶)의 왕과 그 일족에 대한 처우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十九年 金官國主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幣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角干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法興王 19년)

위의 사료에 따르면, 金官國의 마지막 왕이었던 金仇亥가 신라에 항복하여 오자 그에게 上等의 位를 주고 그의 본국을 식읍으로 준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上等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sup>20)</sup> 그의 季子였던 武力은 그후 신라에서 크게 활약하여 角干的 位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그리고 武力의 아들인 舒玄과 武力의 손자인 庾信은 장군 직을 차지한 군사적 elite로 성장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진골신분을 갖

18)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18년조.

19) 일반 城民의 후손은 평인으로 대우되었겠지만, 城主의 후손은 두품신분 정도로 편입되었을 수 있다.

20) 이를 大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田鳳德, “新羅 最高官職 上大等論”, 「韓國法制史研究」, 1968, p. 319).

21)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法興王 19년조.

게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밖의 大加耶(金官加耶)勢力은 어떠한 신분편제를 받았을까. 기록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金官加耶의 지배세력 중 왕과 그 가족을 제외한 세력으로서 금관국 멸망시 王京으로 사민된 집단이 있었다면 이들은 두품신분으로 편제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가야계의 지배세력으로 김해지역에 계속 머물렀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분편제되었을까 궁금하여진다. 金官國은 法興王 19년 신라에 병합되며 金官郡으로 되었다가 文武王 20년(680)에 小京으로 되었다고 한다.<sup>22)</sup> 이 경우 小京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시켜 任那加耶 출신으로 中原京人이었던 強首의 신분이 6 두품이었던 점을 상기하면,<sup>23)</sup> 金官京人 중에도 6 두품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금관국의 주민 중 일부만이 6 두품까지 올랐고 나머지는 그 밑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면서도 小京人들 중 小京안의 하부구획인 村에 사는 사람들은 촌주 정도의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나 궁금하다. 따라서 小京의 지배세력들이 準王京人으로 두품신분을 가졌는지, 촌락민과 같이 촌주신분을 가졌는지 또는 소경인 중 일부 지배세력이 두품신분을 가졌고 나머지 소경안의 촌락에 사는 세력들은 촌주신분을 가졌는지는 앞으로 정리할 문제이다.

다음은 신라의 3국통일 과정에 百濟人과 高句麗人들을 골품제에 어떻게 편입하였나 보기로 한다. 먼저 백제인에 대한 신분편제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우선 신라가 백제를 복속하는 과정에 신라를 도왔던 백제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대우가 어떠한지 볼 수 있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 ① 百濟人員 並量才任用 佐平忠常·常永·達率自簡 授位一吉浚充職總管 恩率武守 授位大位奈麻充職大監 恩率仁守 授位大奈麻充職弟監(「三國史記」5, 太宗武烈王

22) 「三國史記」34, 地理 1, 金海小京條.

23) 李基白, 앞의 책, 1974, p. 44.

7년 11월 22일)

- ② 論功…百濟達率助服·恩率波伽 與衆謀降 賜位助服級澹 仍授古陁耶郡太守(「三國史記」6, 文武王 元年 9월 27일)

위의 두 기록만을 가지고 보면 그 모두가 백제 멸망후에 백제인에 대한 대우를 한 것이 된다. 그중 앞의 사료에는 백제의 佐平과 達率을 一吉澹으로 삼았고 恩率을 大奈麻로 삼은 것이 나와 있다. 그리고 위의 사료에 의하면 백제의 達率·恩率을 級澹으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백제병합을 도와준 백제인들에게 주어진 관등으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이들이 신라의 6두품 대우를 받게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백제인들은 진골신분에 소속되었으면서 級澹이나 一吉澹의 관등을 받은 것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백제인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그들이 진골신분을 가지기는 어려웠다고 해야리진다.

이제 3국통일 후 백제인에 대한 골품신분 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百濟人位 文武王十三年以百濟人授內外官 其位次視在本國官銜 京官 大奈麻本達率 奈麻本恩率 大舍本德率 舍知本扞率 幢本奈率 大烏本將德 外官 貴干本達率 選干本恩率 上干本德率 干本扞率 一伐本奈率 一尺本將德 (「三國史記」40, 職官 下)

위의 사료는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후 그 주민에 대한 골품사회 편입을 위한 규정임이 틀림없다. 당시 백제인들에게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제의 관등에 의하여 신라의 관등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인들에게는 京位와 外位가 주어졌다. 京位는 王京인들이 차지하였고 外位는 지방민들에게 주어졌던 관등이다. 자연, 구백제인으로 왕경에 이주한 자들에게는 경위가 주어졌고 지방에 머물러 거주한 자들에게는 외위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백제인 모두에게 그와 같은 경위와 외위가 주어진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신라통치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관등이 주어졌다고 해야리진다.

그런데 文武王 13년의 규정에 보면 백제인들에게 주어질 관등은 京官 10 등급인 大奈麻와 外官 4 등급인 貴干이었다. 그중 外官인 貴干은 京官 으로는 大奈麻에 해당한다.<sup>24)</sup> 이러한 大奈麻는 5 두품이 오를 수 있던 최고의 관등이다. 그리고 貴干은 次村主가 오를 수 있던 관등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다. 자연 백제가 멸망된 후 신라에서 활동하게 된 백제인들은 골품신분 중 5 두품까지 그리고 지방에 토착해 살던 자들은 진촌주까지 이른 것을 알 수 있다.<sup>25)</sup> 한편 大奈麻나 貴干的 관등을 받았던 자들이 승진하여 그 이상의 관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었을까 궁금하다. 그러나 백제의 달솔이라면 佐平 다음 가는 관등으로 백제 최고관등 중의 하나였다. 자연 달솔에 올라 있던 백제인들은 이미 백제에서 승진할만큼 승진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백제인들이 오를 수 있던 최고관등은 일반적으로 大奈麻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大奈麻로 편제되었던 자들이 승진하여 그 이상 관등을 갖게 되면 6 두품신분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그리고 백제인 佐平들에 대한 관등부여 규정이 없는 것도 주목된다. 백제 멸망시 좌평의 수가 늘어나 있기는 하였으나,<sup>26)</sup> 그중 많은 수가 唐에 잡혀갔기에 신라에 편입된 佐平은 큰 문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佐平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 위와 같은 5 두품 또는 진촌주신분이 된 집단 밑에는 4 두품이나 차촌주 및 平人 등의 신분으로 편제된 집단도 있었을 것이다. 여하튼 앞에서 알아 본 것과 같이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백제인들이 6 두품 신분으로 편입된 일도 있으나, 그 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그 밖의 백제인들은 5 두품, 4 두품, 平人 등의 신분으로 편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4) 「三國史記」 40, 職官 下, 外官條.

25) 원래 眞村主는 述干까지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百濟人으로 眞村主가 된 경우 貴干까지 밖에 못 올랐으니, 이는 엄연한 차별을 뜻한다.

26) 拙稿,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 45, 1978, pp. 44~51.

다음 高句麗 병합 후 高句麗人들에 대한 신분편제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고구려인들 중에는 신라의 진골로 편입된 예도 있다.<sup>27)</sup> 그러나 진골로 편입된 고구려인의 수는 결코 많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6 두품, 5 두품, 4 두품의 두품신분을 갖게된 고구려인은 보다 많았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다음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高句麗人位 神文王六年以高句麗人授京官 量本國官品授之 一吉澹本主簿 沙澹本大相 級澹本位頭大兄·從大相 奈麻本小相·狄相 大舍本小兄 舍知本諸兄 吉次本先人 烏知本自位 (「三國史記」 40, 職官 下)

위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인들과는 달리 고구려인들에게는 京官만이 주어졌고 그 최고관등은 17 등 관등 중 7 등급인 一吉澹이었다. 고구려인들에게 外官을 안 준 것은 文武王 14년에 外官制가 京官名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라 해야려진다.<sup>28)</sup> 여기서 골품제와 관련시켜 주목되는 사실은 고구려인들이 받았던 최고 관등이 一吉澹이었다는 사실이다. 고구려인들에게 주어질 一吉澹·沙澹·級澹은 대체로 왕경인으로서 6 두품 이상 신분을 가진 자들만이 오르던 관등이다. 자연 왕경으로 이주한 고구려인들은 고구려에서 가졌던 관등에 따라 6 두품, 5 두품, 4 두품까지의 두품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인으로 원래 그들이 살던 곳에 머물러 살던 자들 중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신라의 관등을 갖게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두품신분이 아니라 대체로 진촌주·차촌주 정도의 신분으로 편제되었다고 여겨진다.<sup>29)</sup>

여기서, 신라에서 고구려·백제의 주민들에 대한 신분편제를 할 때 양국 국민을 달리 대우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고구려·백제 사람들로 왕경에 사민된 자들의 신분의 상한이 달리 정해진 것을 볼 수 있다. 고구려

27) 拙稿, 앞의 논문. 1985, p. 243.

28) 拙稿, “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新羅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1974, p. 60.

29) 지방의 진촌주가 올랐던 최고 관등은 沙澹이었다. 따라서 지방에 머물러 살던 고구려계 주민들은 백제인들과는 달리 사찬까지 올랐다고 보여진다.

인들에게는 6 두품까지 신분을 갖도록 조치한데 비해, 백제인들은 5 두품까지의 신분으로 편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옛 고구려·백제의 사람들로 신라 왕경이나 소경에 사민되어 활동한 사람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헤아려진다. 한편 9 舊幢이 신라인 뿐아니라 백제·고구려·말갈·보덕국민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미루어, 이들 피정복국의 주민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직업적인 면에서 두품신분으로 편입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피정복국민 가야의 토착세력으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 왔을 때 신라인들을 도와 공을 세운 자들의 가족중 일부가 왕경으로 사민되어 왕경인이 되고, 왕경 신분제에 편입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竹竹의 예로 알 수 있다.<sup>30)</sup>

앞에서는 두품신분집단의 기원에 대하여 보고 신라의 복속사업 수행과정에 새로이 병합한 나라의 국민들을 신라 신분제 안에 편입한 예들을 알아 보았다. 이제 두품신분을 가지게 되었던 또 다른 계통의 집단들에 대하여 헤아려 보기로 한다. 그것은 6 두품귀족보다 높은 신분이었던 진골귀족들의 族降과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신라시대 지배세력의 族降으로 聖骨에서 眞骨로 된 사실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sup>31)</sup> 이에 신라 지배세력의 신분강등에 대한 현상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는 진골신분에서 6 두품신분으로 떨어지는 예를 보기로 한다. 甘山寺의 彌勒菩薩과 阿彌陀佛造像記에 나오는 金志誠(全)은 그 관등이 重阿滄으로 되어 있다.<sup>32)</sup> 重阿滄은 6 두품의 특진관등이기에 金志誠은 6 두품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金氏姓을 가질 수 있던 자들은 關智의 후손과 加耶系統 新金氏 등이 있다.<sup>33)</sup> 金志誠이 그중 어떤 계통과

30) 「三國史記」 47, 列傳 7, 竹竹條.

31) 拙稿, 앞의 논문, 1983, pp. 50~55.

32) 「朝鮮金石總覽」 上, pp. 34~36.

33) 그 밖에 韓歧部の 金氏들도 있었다(「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祗摩尼師今 즉위조 참조).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 역시 關智의 후손인 金氏는 아니었을까 한다.<sup>34)</sup> 그 밖에 진왕족출신의 朴氏族 중에도 진골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두품신분으로 떨어진 세력들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金氏族이건 朴氏族이건 진골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집안에서는 그 신분이 떨어지는 族降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족강은 진골에서 6두품으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6두품에서 5두품으로, 5두품에서 4두품으로 되는 현상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族降이 나타나는 시기를 잘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3국통일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3국통일과정에 신라의 진골귀족세력이 비대하여져,<sup>35)</sup> 그들 사이에 세력을 제한할 필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중 방계집안과 관직을 갖지 못한 집안의 성원들은 쉽게 족강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 족강의 정치적 성격과 그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신라중대에 들어서면 족강의 현상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신라하대에는 그러한 현상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고 헤아려진다.

한편 이같은 족강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행해진 것이라 믿어진다. 그 결과 範淸 같은 사람도 진골에서 족강하여 6두품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족강을 통하여 진골, 6두품, 5두품 등의 신분집단의 폭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각 신분집단은 특권을 유지하여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족강현상때문에 6두품, 5두품, 4두품은 그 구성이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6두품은 주로 6촌장제의 후손으로 6부의 세력가로 있던 집단과 족강한 왕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진골 다음으로 중요한 활동을

34) 당시 金氏族勢力은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이다.

35) 戰功등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노비를 받아 경제적·군사적 실력을 키워나갔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하던 이들 6 두품은 5 두품이나 4 두품과 비교하여 得難이라 할 정도로<sup>36)</sup> 신분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4 두품은 「三國史記」色服 등 조항을 보면 平人과 그 규제가 동일한 것이 많다. 따라서 4 두품은 일반 百姓·平人과 신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실제 사회적 처지에는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하튼 두품신분은 그 기원이 어떤 것이건간에 뒤에 언급하려는 바와 같이 관직을 세습하면서 사회·정치적 제층을 형성하였다.

### Ⅲ. 頭品身分의 維持

이제 신라골품신분 중 두품신분의 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두품신분의 획득, 유지 그리고 그 유지방법 등에 대하여 차례로 정리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라골품제의 유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 앞서 신분의식이 생기는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신분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신분유지가 가능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두품신분이 6 두품, 5 두품, 4 두품으로 구분되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래 두품신분 편성시 그 구분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품신분은 관직, 관등, 색복, 가계, 거주지 등으로 구분이 되는 사회적 신분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시켜 신라인의 신분에 따른 色服 등의 규정에 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三國史記」33, 雜志 2에는 신라인의 色服·車騎·器用·屋舍에 대한 신분별 규제가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興德王 9년(834)의 下敎에 의해 정리된 色服 등의 규정이다.<sup>37)</sup> 그 안에는 대체로 眞骨, 6 頭品, 5 頭品, 4 頭品, 平人(百姓)의 신분별로 각기 사용할 수 있거나 없는 물건과 그 재료 및 집의 규모 등에

36) 「朝鮮金石總覽」上, p. 74.

37) 「三國史記」33, 雜志 2, 色服, 車騎, 器用, 屋舍.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중 色服條에는 각 신분의 남녀를 다시 구분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중 각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정한 것은 일종의 금지적인 명령이다. 그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여 상층신분자는 그 보다 밑의 신분자보다 고급하고 귀한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興德王 9년 위와 같은 규정을 정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下教曰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奇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苟或故犯 國有常刑 (「三國史記」 33, 雜志 2, 色服條)

위의 기록은 신분제에 따른 衣服制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분제에 따른 의복제도는 이미 法興王때 정비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法興王制 自太대角干至大阿澹紫衣 阿澹至級澹緋衣 並牙笏 大奈麻·奈麻青衣 大舍至先祖知黃衣 (「三國史記」 33, 雜志 2)

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위의 규정은 대체로 法興王이 율령을 반포할 때 정해진 것으로 짐작이 간다.

法興王 이후 신라골품제에 의한 色服·車騎·器用·屋舍 등의 규정이 정해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가 되면 신라인은 해당 신분에 주어진 규정을 지켜나가야 하였다. 따라서 신라인들은 그러한 규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명확히 나타내어야만 하였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신분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였을 것이다. 자연 신라인들은 그들이 입던 옷, 타던 수레나 말, 사용하던 용기 및 거주하던 주택을 보면 그 신분을 곧 알 수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6 두품은 진골과 구별되었고 다시 두품신분들 사이에도 뚜렷한 구별이 생겼다. 4 두품과 平人 사이에는 服色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4 두품과 平인의 신분적인 차이가 대단히 큰 것이 아니

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된다.<sup>38)</sup>

한편, 당시 두품신분을 가진 자들의 각종 활동도 그 신분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신라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그 신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들어 볼 수 있다.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신라인들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던 관등, 관직의 상한이 달리 정해져 있었고, 또 속할 수 있던 관부도 달리 정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에 따른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약은 신분의식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믿어진다.

여기서 당시 두품신분을 유지하던 일차적인 까닭이 무엇이었나 궁금하여진다. 이와 관련시켜 신라 골품신분은 출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시 기본적으로 각 신분층을 구성하던 집단이 있었고 이들은 출생에 의해 해당 신분층의 성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었다.

6두품 신분을 가진 집단은 몇 개의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6촌장 계통의 후손으로 그후 6부의 지배세력으로 된 집단이 있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필요에서 대두하여 주로 정부의 관직을 차지하던 집단이 있다. 그 밖에 진골에서 족강한 집단이 있고, 가야·3국 통일과정에서 신라에 항복하여 6두품으로 편입된 집단도 있다. 이러한 여러 계통의 집단 모두가 6두품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6두품 중에는 5두품으로 신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분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다음 5두품 신분을 가졌던 집단에 대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왕경의 지방행정 구획인 里의 지배세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大舍職까지 오를 수 있던 사회·정치적 집단이 있다. 이들은 5두품이 장이 될 수 있던 관청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한편, 백제·고구려인들 중 왕경으로 이

38) 拙稿, 앞의 논문, 1974, p.67.

주된 자들 중에는 5 두품신분으로 편제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지방 촌주 중 국가에 대하여 큰 공을 세워 그 일족이 왕경으로 이주되고 5 두품 정도의 신분으로 편제된 예도 찾아지고 있다.<sup>39)</sup>

4 두품 중에는 坊의 토착세력집단이 있다. 그리고 舍知職까지 오를 수 있었고 司範署와 같은 정도 등급의 관부의 장이 될 수 있던 사회·정치적 집단이 포함될 것이다. 그 밖에 백제·고구려인들이거나 지방 차촌주 중 왕경으로 이주한 집단 중에 4 두품신분으로 편입된 세력들이 있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 平人 중에도 공을 세운 자들에 대해서 4 두품 정도의 신분까지는 상승시켜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점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이다.

이제, 6 두품, 5 두품, 4 두품의 신분마다 여러계통의 집단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주로 왕경이었으며 小京에도 일부 퍼져 살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출생에 의해 그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분명하다고는 하지만 각 신분층의 유지에 대해서는 고찰할 문제들이 더 있다. 이것은 신분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성골집단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의 형제공동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러한 왕족들은 진골로 신분이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sup>40)</sup> 이러한 사실은 진골에서 6 두품으로 되는 族降현상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일정 친족의 신분이 하강되는 족강이 성골에서 진골로, 진골에서 6 두품으로 되는 경우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은 않았다고 믿어진다. 6 두품에서 5 두품으로, 5 두품에서 4 두품으로, 4 두품에서 平人으로의 족강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신분하강보다 일정 친족집단의 하강에 대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족강을 인정하고 보면 신라시대 신분유지의 단위로서 씨족보다는 일정가계집단의 존재가 주목된다. 신라의 奈勿麻立干 이후 왕을

39) 「三國史記」 47, 列傳 7, 竹竹條.

40) 拙稿, 앞의 논문, 1983, p. 55.

배출하던 김씨족의 경우 중고시대에는 그 성원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 그들의 신분도 성골 또는 진골로 국한될 수단은 없었다. 그들 사이에 일정 가계는 최고신분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가계의 성원들은 두품신분까지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김씨족 중에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착하며 지방호족세력이 되는 집안도 생겨났다. 자연 김씨족의 신분 구성은 점차 다양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두품신분에 속한 자들도 해당신분의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해야리진다. 특히 가계유지에는 직제와 방제가 구별되어 방제는 점차 물러나고 그 신분유지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두품신분 안의 여러 씨족, 가계들은 시대에 따라 그 세력이 일정치 않았다. 예컨대, 신라중고시대 말과 중대초에는 元曉-薛聰으로 이어지는 薛氏族 중 일정가계가 크게 활약했으나 신라말에는 3崔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 최씨족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각씨족의 여러 가계집단들의 모습은 계속 변동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그러한 가계 중에는 대가 끊기거나 번성한 집안이 있었고, 번성한 가계는 다시 나누어 직제와 방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때 방제로 밀려난 가계의 성원은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거주지를 옮기게 된 방계가계 성원은 점차 정치·경제적 실력을 상실하고 사회적 지위도 미약해져 그중 일부 방제의 가계 성원은 族降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때 일정 신분에 속한 가계의 성원들은 같은 신분의 가계성원들끼리 혼인을 하여 대를 이어 그 신분을 유지하여 나갔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유지되던 가계는 신라 골품제하에서 신분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일정 가계에서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에 맞는 정치적 진출을 하여야 했다. 그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진출을 못할 때 그 가계는 세력을 잃고 점차 몰락하여 마침내는 신분이 떨어지고 또 거주지도 정치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해야리진다.

한편, 6 두품, 5 두품, 4 두품의 신분에 따라 가계의 운영형태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짐작이 간다.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6 두품은 李·鄭·孫·薛·裴·崔氏와 같은 姓을 가진 집단과 그후 족강된 박씨족·김씨족의 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6 두품에서도 족강이 된 집단이 있어 5 두품·4 두품 신분을 가진 집단에도 위와 같은 姓을 사용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각 姓氏마다 신분을 달리하는 여러 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여러 신분층의 가계 운영형태도 신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6 두품의 경우는 부계가계계승이 강하게 지켜졌으나 4 두품으로 오면 cognatic descent group의 배경이 커지게 되었다고 여겨지며, 5 두품은 그 중간 형태의 계승을 하여 나갔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신분이 높을수록 부계 계승원리가 강하게 작용했고, 신분이 내려갈수록 cognatic descent group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두품신분 집단을 유지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역시 사회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두품신분내의 새로운 성원을 해당 두품의 성원으로 교육·훈련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age-group으로서 화랑제의 운영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교적인 교육기관인 國學·讀書三品科와 관련된 것이다.

그중 먼저 花郎制度에 의한 두품신분의 社會化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화랑제도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郎世記曰 賢佐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三國史記」4, 眞興王 37년)

위의 기록에 의하면 화랑제도의 표면적 기능 중에 善者를 조정에 천거하는 일이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신라시대에는 賢佐忠臣과 良將勇卒이 이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화랑도에 참여하였던 인원의 구성이 어떠한가 주목된다. 우선 「三國遺事」 竹旨郎條의 기

특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 화랑은 진골이었다.<sup>41)</sup> 그러나 그 밑의 낭도는 牟梁部の 得鳥의 예와 같이, 두품신분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여기서 한결음 나아가 생각하면 낭도는 王京의 미성년 자제들로 구성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신분적인 면에서 진골과 두품귀족들의 자제들이 화랑도를 구성하여 집단활동을 한 것이 된다.<sup>42)</sup> 물론 평시에는 각자의 집에서 살며 화랑도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원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화랑도가 가지는 잠재적 기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진골귀족과 두품귀족의 자제들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인하여 이들 신라의 지배세력은 어려서부터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화랑도 안에 있던 여러 신분의 자제들은 그 신분을 초월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화랑도에 속하여 자기 해당 신분의 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배우고 익혀 나가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결국 화랑도의 여러 활동도 이같은 신분적 제약을 뛰어 넘을 수는 없었다고 헤아려진다. 다시 말해, 화랑제도를 유지하여 왕경 미성년자제들에게 해당 신분의 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일을 혼련시키게 되었다. 이것을 사회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명의 화랑을 중심으로 하나의 화랑도집단을 이루었고, 그 유대관계는 평생을 지속하였다고 헤아려진다. 그러한 예가 화랑이었던 竹旨와 낭도였던 得鳥의 관계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화랑제도는 신라중고시대까지 두품귀족들을 관리로 선발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 화랑도집단에 속하여 맺어진 상하의 신분관계는 평생을 지속하였고 동시에 신분적인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구실도 하였다.<sup>43)</sup> 그런데 왕경의 平人들이 화랑도에 속할 수는 없었는지 궁

41) 李基東, “新羅 花郎徒의 社會學的 考察”,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p. 335.

42) 李基白은 平民들도 郎徒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韓國의 傳統社會와 兵制』, 『韓國史學의 方向』, 1978, pp. 194~201).

43) 李基東, 앞의 책, 1980, p. 357.

금하다. 이와 관련된 견해들은 있어 왔으나,<sup>44)</sup> 필자 자신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神文王 2년(682)에는 國學이 설치되어 인재교육을 맡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國學에서는 유교의 경전들을 가르쳤으며 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教授之法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教授之 諸生讀書 以三品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 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孝經者爲上 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 讀曲禮·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教授之 凡學生 位自大舍已下至無位 年自十五至三十皆充之 限九年 若朴魯不化者 罷之 若才器可成而未熟者 雖踰九年許在學 位至大奈鞮·奈麻 而後出學(「三國史記」38, 職官 上)

국학에서는 주로 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였다. 이와 같은 국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은 주로 6두품이라는 연구가 있다.<sup>45)</sup>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신라에는 5두품, 4두품이 장이 될 수 있는 관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禮部의 예하 관서인 大道署, 國學, 音聲署는 적어도 6두품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장이 될 수 있었지만, 典祀署는 5두품, 司範署는 4두품까지의 신분을 가진 자들도 장이 될 수 있었다. 이때 典祀署나 司範署의 장이 각기 5두품, 4두품이 될 수 있었다면 그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다.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5두품, 4두품도 국학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직을 갖게 된 것이 아니었나 한다. 이 때 6두품·5두품·4두품의 교육기간이나 교육내용 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서도 5두품에서 4두품으로 갈수록 국학의 교육내용인 유교교리를 잘 몰라도 그 업무를 수

44) 註 42) 참조.

45) 李基白, 앞의 책, 1974, p. 61.

행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국학은 6 두품을 주로 교육하던 기구였으나 일부 5 두품, 4 두품도 교육대상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6 두품에게는 보다 많은 교육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학에서는 5 두품, 4 두품의 성원을 모두 교육시킬 수용태세도 안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5 두품, 4 두품에 대한 교육은父子간에 또는 가계내에서 행해졌거나 일정관부에 나아간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두품귀족들을 사회화시켜 나감으로 골품신분중 두품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화랑제도나 국학을 통하여 15 세부터 사회화를 시작하여 나감으로 인하여 골품질서 유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중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중고시대까지는 화랑도의 역할이 컸으나 통일이후 각급 정치제도가 정비되면서 두품귀족을 훈련시켜 여러 관직에 나아가게 한 기구는 국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삼국통일 이후에도 화랑제도가 유지되었으며, 이것을 통하여 진골에서 두품귀족까지의 미성년 자제들이 공동활동을 하였고, 골품제 하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쳤고 또 신분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두품신분의 유지와 관련시켜 진골 중심의 골품제에 대한 두품신분에서의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어떤 한 방법만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었다.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복합적으로 기능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선 정치적 장치로 관등의 허구적 이동을 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등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신분에 따른 관등제한을 하고 보니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3국통일을 하는 과정에 각 신분이 최고관등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큰 공을 세우게 되자 이에 대한 포상시 문제가 나타났다. 그 결과 각 신분의 상한 관등을 뛰어넘어 그보다 높은 관등은 줄 수 없고 하여 관등의 허구적 상승제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그 결과 阿滄까지 오를 수 있던 6 두품은 重阿滄에서, 四重阿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大奈麻까지 오를 수 있던 5 두

품은 重大奈麻에서 九重大奈麻까지 오르도록 만들어 주었다.<sup>46)</sup> 한편 大舍까지 오를 수 있던 4 두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허구적 이동을 허락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에 대한 조치도 있기는 하였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등의 허구적 이동이 성립된 시기를 통일전후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47)</sup>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花郎徒의 기능중의 한 측면을 들 수 있다. 대체로 화랑도는 15세에서 18세까지의 화랑과 낭도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sup>48)</sup> 이들은 지배신분의 여러 계층으로부터 나왔다. 이같이 여러 신분에 속한 자들이 화랑집단을 이루고 공동활동을 하게 되어 그들사이의 유대관계는 매우 깊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유대관계는 평생을 지속하였다. 이같은 화랑도의 활동을 통해 각 신분층 출신 인물들은 신분제하에서 각자의 위치를 확인받고 신분에 맞는 생활방식을 배웠다고 해야겠다. 그 결과 화랑도의 성원들은 일찍부터 신분질서를 몸에 익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맺어진 유대관계는 두품신분자들의 신분적인 갈등을 해소하는데 잠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두품신분자들의 갈등·불만해소책의 하나로 종교적인 행사를 들 수 있다.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한 이후 불교사원에서는 각종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상하의 신분층에 속한 자들이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에 빠져들게 되었다.<sup>49)</sup> 노비중에는 신분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교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끝내 믿음을 지켜나간 예도 있다.<sup>50)</sup> 지배세력은 교종을 중심으로 사상적인 일체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비해 억눌려 지내던 하층계급에서는 골품제의 신분적

46) 「三國史記」 38, 職官 上.

47) 武田幸男,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1975, p.147.

48) 李基東, 앞의 책, 1980, pp.338~341.

49) 실체는 신분에 따라 불교신앙의 내용이 달랐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도 크게 보면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믿게 되었다.

50) 「三國遺事」 5, 感通 7, 郁面婢念佛西昇條 참조.

계약이 엄격해질수록 현실이 고통의 바다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러한 세상보다는 아미타불이 산다는 西方淨土에 가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정토 신앙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물론 이같은 체념의 신앙으로서의 정토신앙이 두품신분에 널리 퍼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6두품이었던 元曉가 파계한 후 전국을 떠돌며 이 신앙을 전파한 예로 보아 두품신분에 속한 자들 중에도 그 신분적인 계약을 이겨나가기 위해 정토신앙에 가까워지기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두품신분의 신분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굿, 노래, 무용 등이 시행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러한 예 중의 하나가 처용가이다. 처용에 대해서는 그 출신을 이야기한 연구도 있다.<sup>51)</sup> 그러나 처용은 대체로 왕경의 두품신분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여겨진다. 이때 처용은 처용가라는 노래를 지어 그 신분적인 계약에서 오는 불만을 털어 놓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라인들은 가면을 쓰고 신분적 갈등에서 오는 불만을 털어 놓음으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불만해소책은 두품신분 유지의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두품신분을 가진자들 중 골품제에 대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 내용이나 반응도 여러가지였다. 그중 薛勵頭는 중국으로 건너가 활약을 하였다.<sup>52)</sup> 그리고 金志誠은 일종의 체념을 하여 불교와 도교에 빠져들었다.<sup>53)</sup> 李純은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sup>54)</sup> 元曉 역시 골품제의 한계를 느껴 전국을 떠돌며 정토신앙을 전파했다. 그리고 신라말의 崔致遠은 관직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며 禪師들과 교류하였고 도교에 가까워지기도 하였다.

51) 李佑成, “三國遺事 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金載元紀念論叢」 1969, pp. 89~127.

52) 「三國史記」 47, 列傳 7, 薛勵頭條.

53) 甘山寺의 彌勒菩薩造像記와 阿彌陀如來造像記에 그러한 표현이 있다(註 32 참조).

54) 李基白, 앞의 책, 1974, pp. 58~59.

신라 중고시대 이래 위와 같이 골품제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던 두품신분자들은 계속 나왔다. 그러나 신라가 멸망할 무렵까지 중앙정부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과 벌을 시행하여 골품질서를 유지하여 나갔다. 그 예로 牟梁部の 세력가였던 益宣의 잘못에 대하여 모랑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진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sup>55)</sup> 이는 일정 지방행정 구획을 단위로 하여 그 출신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막는 조치로, 매우 가혹한 벌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두품신분자들이 국가를 위해 관직을 받고 활동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수로 토지·노비 및 녹봉 등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대우는 주로 관등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졌다. 그리고 이같은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두품신분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여 주고 나아가 중간 지배층으로서의 두품귀족을 이용하여 국가통치를 행할 수 있었다.

#### Ⅳ. 頭品身分層의 活動

신라시대 두품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 역시 그 신분에 따라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 하나는 「三國史記」 職官志에 나오는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로 두품신분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정리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밖의 다른 사료를 통하여 당시 두품신분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품신분별 활동분야에 어떤 차이가 있었으며 그 특성이 무엇이었나 알아 보는 것이다.

먼저 職官志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6두품·5두품·4두품의 신분에 따른 정치적 활동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시켜 정치적 지위의 분화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신라가 국가를 형성한 이후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가통치의 업무가 분명하게 결정되었다. 특히 法興王은 율령을 반포하여 정치조직과 골품제도 등을 정비하였다. 法興王대에는 上大

55) 「三國遺事」 2, 紀異 2, 孝昭王代 竹旨郎條.

等·兵部令 등의 관직과 兵部 같은 관부가 공식적으로 나뉘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가통치업무를 관리들이 분담·처리하고 그에 따른 관직들도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法興王대에 이르러 그러한 국가통치업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한 관부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川前里書石이나 眞興王巡狩碑를 보면 「三國史記」職官志에서 볼 수 없는 여러 직책명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職官志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직책에 대하여 모두 알 수는 없다. 단지 직관지의 기록을 이용하면 두품신분마다 오를 수 있는 관직이나 진출하던 관부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알 수 있다고 헤아려진다.

이와같이 정부의 관직·관부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각 관직과 관부의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 또한 구분되었음에 틀림없다. 관직이 높으면 책임이 많아지고 그에 못지 않게 권한도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관직이 높거나 중요한 관부의 경우 그 정치적 활동이 미치는 범위도 넓어지고 중요해졌다. 물론 이 경우 구체적인 일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에 비하여 비중이 낮은 관직이거나 관부에서는 책임도 작았지만 권한도 작았고 활동이 미치는 영향범위도 좁았을 것이다. 여하튼 신라 중고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여러 형태의 지위를 담당할 인재를 충분히 모집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화랑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후 神文王대에는 국학이 설치되어 이러한 인재배출의 임무를 일부 맡게 되었다. 한편 정치적·사회적 진출을 하여 여러 형태의 관직을 차지할 수 있던 각 개인마다 성실히 그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그 임무를 이탈치 않도록 정부에서는 일정한 보수를 주었고 또한 제제를 포함한 상과 벌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한 예 중에는 世俗五戒와 같이 유교나 불교의 교리로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도 있고 律令안에 상벌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직·관부와 같은 정치제도는 각기 맡은 바 업무의 비

중·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직관지에 나오는 정치조직이 신라시대의 신분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중 진골신분을 가진 자들은 신라의 17 관등 중 伊伐滄까지 오를 수 있었고 그중 金庾信과 같은 일부 인물은 특진을 하여 大角干·太大角干까지 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진골신분자들은 직관지에 나오는 執事部(省)·兵部 등 여러 행정관부의 장인 습까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진골들이 모든 관부의 장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믿어진다. 예컨대 직관지에 나오는 食尺典·直徒典·古宮家典과 같이 격이 낮은 관부에<sup>56)</sup> 그들이 진출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진골이 진출하던 관부는 일정 단계 이상의 격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신라 정부의 관부에는 장관에서 말단관리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로 이루어진 관직체제가 편제되어 있었다. 관부에 따라 단계별 명칭이 틀리기는 하지만 神文王 이후 일반적으로 5개 단계의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이러한 관직과 골품신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골품신분마다 오를 수 있던 관등의 상한이 정해졌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신라의 5단계 관직에 오를 수 있던 관등 또한 달리 정해져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관등을 통해 어떤 신분에 속한 자가 앞에 언급한 5단계 관직에 올랐는지를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중 최고의 관직인 습에는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고 차관이었던 卿 등에는 그 관등으로 볼 때 진골과 6두품이 오를 수 있었다.<sup>57)</sup> 그 밑의 3단계 관직이었던 大舍에는 5두품 이상이면 오를 수 있었다. 4단계 관직인 舍知와 5단계인 拭는 관등으로 보면 4두품 이상이면 오를 수 있던 관직이다. 이같은 5개 단계의 관직에 오를 수 있던 사람들의 신분하한은 알 수 있으나 그 상한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예컨대 舍知나 拭는 그 관등으로 보면 진골도 차지할 수 있

56) 「三國史記」 38, 職官 上.

57) 李基白은 앞의 책, 1974, p.38에서 6두품은 官職면에 있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한 특권과 계약 밑에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었으나 실제 진골이 그러한 관직을 차지하였는지는 크게 의심이 간다. 물론 신라말 골품질서가 어지러워지는 상황에서 상층신분인 진골·6두품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점차 낮은 단계의 관직까지 차지하게 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라하대의 일일 뿐 신라 중대 이전에는 그러한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다름아니라 직관지에 나오는 여러 관부의 장의 지위가 같지 않았고, 그것이 앞에 말한 5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승을 장으로 하는 관부를 비롯하여 卿·大舍·舍知 등을 자기 장으로 하는 관부가 나뉘고 있다.

그런데 史가 장인 관부는 찾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위에 언급한 4개 단계의 관부와는 달리 看翁(染谷典·壁典·薊園典·豆吞炭典 등)·母(朝霞房·染宮 등)·翁(南桃園宮 등)·干(滓典 등)·女子(針房) 등의 관리가 책임자로 있던 관부들이 있다. 이들 직이 어떤 단계의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태여 추측하자면 「三國史記」 39, 職官 中에 나오는 다음사료들을 주목할 수 있다.

- ① 平立宮典 大舍二人 史二人
- ② 明治典 景暉王二年置 大舍一人 看翁一人
- ③ 染谷典 看翁一人

위의 기록에 따르면 平立宮典과 明活典에 大舍가 책임자로 있어 같은 등급의 관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大舍 밑에는 平立宮典에는 史가 있었고 明活典에는 看翁이 있어 史와 看翁이 동급 정도의 관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看翁 등의 관직을 史와 같은 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신라 관부 역시 5개 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職官 上에는 제 5단계의 관부가 없다. 제 5단계 관부는 職官 中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staff authority에 속한 관부는 4단계이고, 궁중소속의 잡일을

하는 관부까지 합하면 5 단계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三國史記」 職官 上에 나오는 여러 관부들을 4 단계로 나누어 그 특성을 보기로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관부의 장이 될 수 있던 관등을 통하여 몇단계의 관부인가를 정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新羅 官府의 등급\*

제 1 단계 관부(眞骨이 長인 관부)
執事省, 兵部, 調府, 京域周作典, 四天王寺成典, 奉聖寺成典, 感恩寺成典, 奉德寺成典, 奉恩寺成典, 倉部, 禮部, 乘府, 司正府, 例作府, 船府, 領客府, 位和府, 左理方府, 右理方府.
제 2 단계 관부(頭品 이상이 長인 관부)
靈廟寺成典, 賞賜署, 大道署, 典邑署, 永昌宮成典, 國學, 音聲署, 工匠府, 六部少監典.
제 3 단계 관부(5頭品 이상이 長인 관부)
大日任典, 彩典, 左司祿館, 右司祿館, 典祀署, 新宮, 東市典, 西市典, 南市典, 京都驛, 食尺典, 直徒典.
제 4 단계 관부(4頭品 이상이 長인 관부)
司範署

※ 본표는 「三國史記」 38, 職官 上에 나오는 관부만으로 작성됐다. 그중 古宮家典, 漏刻典 등은 어느 단계인지 알 수 없어 제외하였다.

「三國史記」 38, 職官 上에 나오는 관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는 職官 中에 나오는 內省과 그 소속관부, 御龍省과 그 소속관부 그리고 東宮衙와 그 소속관부들로 구성된 왕실관계 업무처리기구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표에 나오는 제 1 단계 관부에 대한 문제를 잠시 보기로 한다. 우선 이들 관부의 장이 되기 위한 관등은 대부분 大阿湊 이상으로 나와 있다. 그중 奉聖寺聖典, 感恩寺成典, 奉德寺成典, 奉恩寺成典의 장인 衿荷臣의 관등은 알 수 없으나 四天王寺成典의 衿荷臣의 관등으로 미루어 이들도 大阿湊 이상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左理方府의 丞이 되기

위한 관등이 級澮에서 迺澮까지로 되어 있다. 이 경우 右理方府의 승도 그 관등이 左理方府의 승과 같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級澮에서 阿澮까지는 6 두품도 오를 수 있던 관등이기에 이들 두개 관부의 장에는 6 두품도 임명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부장의 명칭이 승이고 진골이어야만 오를 수 있는 관등규정으로 보아 일단 진골들이 장으로 임명된 관부로 보아 두기로 한다.

다음 2 단계 관부의 장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卿이라 하겠으나 그 외에 다른 명칭들도 보인다. 이러한 관직에 나아가기 위한 관등은 주로 級澮에서 阿澮까지였다. 그러나 그보다 낮은 관등인 奈麻·大奈麻로서 이들 관부의 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5 두품도 그 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들 단계 관부의 장은 앞의 左·右理方府의 경우와 같이 주로 6 두품과 진골신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두기자 한다. 六部少監典의 監郎이 될 수 있던 관등내용이 탈락되어 있어 그 신분을 알 수 없다. 그러나 監郎 밑에 있던 大奈麻職은 분명히 5 두품 정도 신분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그보다 위의 監郎은 6 두품출신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아두기로 한다.

다음 제 3 단계 관부의 장이 될 수 있던 관등을 보면 주로 奈麻에서 大奈麻까지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3 단계 관부의 장은 대체로 5 두품이거나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임명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京都驛의 책임자인 大舍職은 舍知에서 奈麻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가 오를 수 있었다. 그러한 관등만으로 보면 大舍職은 4 두품도 차지하던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食尺典이나 直徒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러한 자리는 4 두품보다 5 두품이 많이 차지하던 것으로 일단 정리하여 두기로 한다.

한편 제 4 단계 관부로는 司範署 하나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司範署의 장인 大舍職에는 調府舍知와 같은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調府舍知가 되던 관등은 舍知—大舍였기에 司範署의 大舍 역시

그 관등으로 미루어 4 두품이 주로 임명된 자리로 보아왔다.<sup>58)</sup> 그런데 같은 大舍職이라 하여도 京都驛의 大舍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 두품도 임명되었기에 司範署의 大舍職에 오를 수 있던 관등을 調府의 大舍가 아닌 舍知와 비교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그러면서도 調府와는 달리 司範署가 禮部 소속 관청으로 大舍職에 차등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司範署의 책임자를 일단 4 두품으로 보아두고자 한다.

그밖에 5 단계 관부는 「三國史記」 職官 上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그에 비해 職官 中에는 앞에서 언급한 看翁·母·女子 등을 책임자로 하는 관부들이 있어 이를 5 단계 관부로 보아 두고자 한다. 한편 職官 上에 나오는 漏刻典이나 古宮家典의 책임자의 관등이 나오지 않아 그 장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앞에서 신라 관부와 골품신분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그와 같은 관계는 軍官·外官에도 적용됨에 틀림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겠다. 특히 신라하대 진골·6 두품 등 상급지배세력의 숫적 증가에 따라 그들이 하급 관직까지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9)</sup>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신라하대에만 일어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시켜 관직과 신분간의 관계에 대하여 좀더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三國史記」 40, 職官 下에 나오는 諸軍官條의 다음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

- ①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實幢四人 漢山停羅人爲營爲停三人…位自眞骨級澮至角干爲之 至景德王時 熊川州停加置三人
- ② 大官大監 眞興王十年置 掌大幢五人 實幢五人 漢山停四人…共六十二人 着衿眞骨位自舍知至阿澮爲之 次品自奈麻至四重阿澮爲之(「三國史記」 40, 職官 下)

58) 拙稿, 앞의 논문, 1983, p. 49.

59) 拙稿, 앞의 논문, 1985, p. 290.

위의 기록을 보면 장군직은 진골만이 차지하였고 그 관등은 級澮에서 角干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장군 밑의 大官大監은 진골과 次品이 모두 오를 수 있었다. 그중 次品은 眞骨 다음의 신분인 6두품이라 보아 틀림이 없다. 자연 軍官職으로는 두번째인 大官大監은 진골과 6두품이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신분에 따라 大官大監이 될 수 있던 관등이 서로 달랐다. 그 중 진골은 舍知부터 阿澮까지였고 6두품은 奈麻부터 四重阿澮까지로 되어 있다. 이는 6두품이 높은 관등을 가져야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을 뜻하며, 신분차별 조치가 분명하다.

한편, 진골로서 大官大監이 될 수 있던 하위의 관등이 舍知였던 점을 보면, 진골로서 初仕職이 대관대감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한다.<sup>60)</sup>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군관직에만 해당하였을까. 大官大監의 예로 미루어 대체로 진골이 장관이 되던 관부의 제 2급 관직인 卿에도 진골이 임명되었으리라 보여진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6두품·5두품·4두품의 장이 될 수 있던 관부에도 해당되었을 것이다. 6두품은 卿이나 大舍까지의 관직을 차지했고, 5두품은 大舍나 舍知를, 4두품은 舍知나 史의 관직을 차지했다고 보여진다. 이는 나아가 國學과 같은 6두품 이상 신분자가 장이 되던 관부에 진골이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하였겠으나, 진골의 初仕職 정도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주로 6두품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리고 3단계 관부에는 진골이 장이 되기보다는 주로 5두품이 장이 되었고 일부 6두품이 장으로 될 수 있지 않았나 한다. 4단계 관부의 장에는 주로 4두품이 임명되었지만 5두품도 일부 임명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5단계 관부의 장에는 주로 4두품이 임명되었다고 헤아려진다.

이제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을 통하여 신분별 활동분야가 어떠한 것이었나 알아 보기로 한다. 먼저 6두품의 활동에 대하여 정리할

60) 이와 관련시켜 拙稿, 앞의 논문, 1985, p. 272 참조. 그런데 申澮植은 眞骨이 관등을 최초로 받을때 하하울 級澮이라 한 바 있다(「新羅軍主考」, 「白山學報」 19, 1975, p. 82).

수 있다. 두품신분 중 6두품의 활동에 대하여는 이미 정리된 바 있다.<sup>61)</sup> 그러한 결과에 따르면 6두품은 첫째, 종교적인 면에서 특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문적인 면에서 뛰어났다. 특히 6두품 출신이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학문적 실력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6두품은 국학의 학생이 되는데 가장 흥미를 가졌고 또 독서 3품과의 응시자도 대개 6두품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이들 6두품이 골품제 자체를 개혁하려 한 바도 있다.<sup>62)</sup>

실제 6두품이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정치적 진출을 하였던 것은 그들이 진출했던 관부나 관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진골이 장관이었던 관부의 차관이 되어 학문적인 실력을 가지고 통치의 이념적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6두품이 장이 될 수 있던 賞賜署, 大道署, 典邑署, 永昌宮成典, 國學, 音聲署, 工匠府 등의 중앙관부의 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들 자신이 가진 학문적 실력이 배경이 되어 그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들 6두품은 정책결정을 하기보다, 정책결정을 하던 최고 정치권력자들 밑에서 전문적인 임무를 담당하던 고급관료에 해당하였다.

이들 6두품중 국학의 장이 될 수 있던 자는 유교의 경전에 익숙하여 있었다고 보여진다. 6두품은 유교를 익히 알고 있는 유학자들이 많았다고 믿어진다. 6두품은 정치적, 유교적 식견 뿐아니라 문장, 병법, 음악 등에 대한 고급전문가들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들을 볼 수 있다.

① 及太宗大王卽位 唐使者至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一見說釋無疑 滯王驚喜 恨相見之晚...文武王曰 強首文章自任 能以書翰致意於中國及麗濟二邦 故能結好成功 我先王請兵於唐以平麗濟者 雖曰武功 亦由文章之助焉 則強首之功 豈可忽也 授位沙湊 增俸歲租二百石 (『三國史記』 46, 強首條)

② 幸靈廟寺前路 閱兵 觀阿湊薛秀眞六陣兵法 (『三國史記』 7, 文武王 下, 14년 9월)

61) 李基白, 앞의 논문, 1971; 앞의 책, 1974, pp. 34~64.

62) 李基白, 앞의 책, 1974, pp. 57~64.

- ③ 多 唐使到 傳詔 與弩師仇珍川沙澮廻命造木弩 放箭三十步 何也 對曰 材不良也 若取材本國 則可以作之 天子降使求之 即遭福漢大奈麻 獻木 乃命改造 射至六十步 問其故 答曰 臣亦不能知其所以然 殆木過海 爲濕氣所侵者歟 天子疑其故不爲 劫之以重罪 而終不盡呈其能(「三國史記」 6, 文武王 上 9년 冬)

위의 기록(사료 ①)에 나오는 沙澮 強首는 漢文의 해독과 작문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阿澮 薛秀眞(사료 ②)은 六陣兵法에 능통하였음이 분명하다. 沙澮 仇珍川은 弩의 제작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 唐에 까지 불리어 갔다.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문장에 능통했던 強首나, 兵法에 밝았던 薛秀眞이나 무기제조에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던 仇珍川은 모두 6 두품 이상의 신분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이 진골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6 두품 중에는 유교적인 실력 외에 병법, 문장, 무기제조에 대한 고급한 능력을 갖추고 있던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玉寶 高와 같은 뛰어난 음악가도 6 두품 중에서 나왔다.<sup>63)</sup> 이렇게 보면 6 두품 중에서 고급관료가 배출되기도 하였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도 여러 부문에 걸쳐 나온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여하튼 6 두품의 임무는 5 두품이나 4 두품의 그것보다 중요하였고 자연 그 권한도 컸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6 두품을 得難이라 하였다고 믿어진다.<sup>64)</sup>

다음 5 두품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의 기록에 5 두품신분을 가진 자라고 단정할만한 구체적 인물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三國史記」 職官志에는 5 두품 신분을 가진 자가 주로 차지했다고 믿어지는 중앙관부의 大舍職과 그에 준하는 관직이 있다. 그리고 이같은 大舍를 長으로 하는 여러 관부들이 나오고 있다. 그중 職官 上에 나오는 각급 중앙관서에 5 두품이 장으로 될 수 있던 관부로는 大日任典·彩典·左司祿館·右司祿館·典祀署·新宮·東市典·西市典·京都驛·食尺

63) 「三國史記」 32, 雜志 1, 樂條.

64) 崔致遠, “聖住寺朗懸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 p. 74.

典·直徒典 등이 있어 그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관부는 그 자체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던 기구는 아니었다. 이들 관부는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던 관부였다.

한편 南山新城碑 제 3 비에 나오는 (部)監△ 이었던 大舍 △△次라는 인물은 대체로 5 두품 신분을 가진 자였다고 생각된다.<sup>65)</sup> 남산신성 축조를 위한 力役動員시 1개 部에서 몇 개씩의 里의 인원을 각기 하나씩 단위로 삼았다고 믿어진다. 이때 監△이란 직책이 그와 같은 동원시 部의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헤아려진다. 자연 5 두품은 역역동원시에도 동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말단 책임자인 主刀里의 作上人보다는 한층 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 두품은 국가통치에 있어서도 중급관료로 존재하였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도 중급기술자로 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sup>66)</sup> 그리고 5 두품 신분자들이 관직을 갖는 데에는 학문적인 실력보다 전문적인 기술이 한층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여진다.

다음 4 두품의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三國史記」職官志에 보면 격이 가장 낮은 관부에는 4 두품이 임명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南山新城碑에도 里를 단위로 한 인원동원시 그 책임자인 作上인에 4 두품이 임명되었다고 보여진다.<sup>67)</sup> 이로서 4 두품은 하급관료 또는 하급기술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신분층이었음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일은 고급한 일도 아니며 정책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4 두품도 말단관직임말정 보다 중요한 관부에 설치된 자리에 있을 경우 정책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었다. 이와 관련시켜 다음 기록을 볼 수 있다.

65) 拙稿, 앞의 논문, 1974, p.6에 나오는 南山新城碑 第3碑의 A집단은 관등상으로는 5 두품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C집단이 4 두품 정도 신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5 두품으로 보아 두었다.

66) 新羅聖德大王神鐘에 나오는 鑄鐘大博士大奈麻朴從鎰, 次博士奈麻朴實奈 등의 인물들로 보아 5 두품 중에는 鑄鐘의 전문가들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67) 拙稿, 앞의 논문, 1974, p.6의 제 3 비에 나오는 (里)作上人 이하의 主刀里 출신집단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九月 以子玉爲楊根縣小守 執事史毛肖駁言 子玉不以文籍出身 不可委分憂之職 侍中議云 雖不以文籍出身 曾入大唐學生 不亦可用耶 王從之 (「三國史記」 10, 元聖王 4년)

위의 기록에 의하면 文籍出身이 아닌 子玉을 小守로 임명하려 하자 執事部의 말단관리라 할 수 있는 史인 毛肖가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지적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毛肖가 4 두품이라는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자리가 4 두품도 오를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 4 두품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시켜 보기로 하였다. 여하튼 이 문제는 子玉이 비록 文籍出身은 아니지만 唐의 學生으로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임명할 수 있다는 執事部 侍中의 의견이 왕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子玉이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그렇더라도 執事部의 말단관리였던 執事史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다른 관부에서도 4 두품 또는 5 두품 정도 관리들이 실제 정책결정은 할 수 없더라도 정책결정과정이거나 수행 중에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4 두품에서 5 두품으로 다시 5 두품에서 6 두품으로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정치적 활동의 영향력은 커졌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이들 두품 신분자들이 일정 관부의 장으로 있을 때 그 정치적 힘은 보다 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해야겠다. 그런데 신라의 정치적 통치업무, 사회적 수행 임무가 늘어나며 점차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져가게 됨에 따라 그 역할도 점차 복잡하게 세분되어 나가기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三國史記」 職官志에 나오는 관직외에 더 많은 정치적·사회적 관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각 관직·관부의 기대되는 역할 수행목이 좁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보수와 상벌규정이 점차 명확해지게 되었다. 이 경우 진골들은 주요 행정관부의 장으로 보다 폭 넓은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6 두품·5 두품·4 두품은 정책결정을 하기 보다 개인적 능력을 가지고 결정된 정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신분이 내려갈수록 보다 세분되고 중요성도 낮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사실은 직관지에 나오는 관부에 어떤 신분층의 사람이 임명되었나를 상기하면 어느정도 쉽게 짐작이 간다.

이와 같은 6 두품·5 두품·4 두품의 자기 다른 신분층은 직업 자체가 다르게 되었고 또 각 신분층에 따른 행동양식을 달리했다. 또한 이들 각 두품신분에 속한 자들은 父子사이에 또는 일정가계에 일정한 직을 세습하게 되는 현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三國史記」 職官志의 중앙관직과 무관직·외관직 등이 구분되어 있듯 군인집안은 대를 이어 군인을 배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두품신분 사이에는 자기 다른 신분에 속한 자들과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그러한 혼인에 의하여 두품신분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나갈 수 있었다고 믿어진다.

한편 두품귀족들은, 위와 같이 각자의 신분에 맞는 관직에 오르고 관부에 소속되었는데, 그 밖에도 국가를 위하여 國役, 部役 및 조세부담과 같은 경제적 의무도 이행하였다. 得鳥와 같이 部役に 동원되거나, 군대에 나가기도 했고, 南山新城碑에 나오고 있듯 力役動員도 되었다. 그밖에 두품신분자들은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이 일정한 관직을 갖고 국가를 위해 활동하게 되면 조세를 부담하기보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관등을 부여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田宅衣物 및 식량 등 일정한 경제적 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두품귀족들은 이같은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불교사찰을 축조하고 불상을 만들어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있었다.

한편 두품귀족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중 우선 두품신분에 속한 개개인은 각 신분에 맞게 정치적 진출을 하였다고 믿어진다. 이때 그와 같은 진출을 하는 방법으로는 추천, 자천,<sup>68)</sup> 자원<sup>69)</sup>에 의하거나 有功者에 대한 보상에 의한 것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이들 두품귀족들은 기본적으로 화랑도의 수련을 받았거나 국학출신이어야 했

68) 「三國史記」 47, 列傳 7, 裂起條 참조.

69) 「三國史記」 47, 列傳 7, 驟徒條 참조.

으며 후에는 독서삼품과를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기술직에 나갈 때는 세습에 의해 그 직을 물려받지는 않았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 V. 頭品身分制의 變動

신라의 골품제도는 매우 엄격한 신분제라고 알려져 왔다. 실제 골품제는 신라의 정치적·사회적인 산물로서 편성되었으며, 점차 골품제가 신라인의 정치적·사회적인 활동을 규제하는 장치로 되었다. 그런데 골품제가 비록 엄격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고정불변한 제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성골의 소멸이나 3두품·2두품·1두품 신분이 平人(百姓)身分으로 된 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신분층 자체의 변동이 된다. 그런데 6두품·5두품·4두품의 두품신분은 골품제 편성시에 편제된 후 신라멸망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 틀림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 두품신분 구성원의 사회적·정치적 성격 등이 변동되었다고 믿어진다. 이제 그와 같은 두품신분의 변동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이와 관련시켜 李基白의 견해를 주목할 수 있다.<sup>70)</sup> 특히 6두품귀족들은 국왕과 결합하여 정치적 참여를 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라중대 전제주의가 무너진 후 진골귀족들이 대두하자 중앙정치무대에 여러가지 모순이 나타나게 되면서 6두품은 이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두품이 唐에 외교사절로 가거나 유학을 하여 공부를 하며 스스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각을 키워나가게 되었다. 대규모 숙위가 두품신분의식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예컨대 憲德王 17년의 관비유학생 중에 두품신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의 의식변화가 주목된다. 실제 6두품은 당에 유학하여 과거를 통

70) 李基白, 앞의 책, 1974, pp. 59~64.

한 立身出世의 제도를 보고 경험한데서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6 두품 외에도 5 두품·4 두품의 신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러한 두품신분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골품계가 편성된 法興王 이후 통치조직이 일단 정비되는 神文王까지 관직·관부의 설치는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두품귀족들이 차지할 수 있던 內外의 관직·군관직들도 늘어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던 관부도 늘어났다. 그 결과 신라중고시대를 거쳐 중대에 이르게 되면 두품신분은 사회·정치적 세력층(socio-professional strata)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품신분층에는 원래 사로 6 촌장의 후손들 중 우세한 지위를 누리던 집안을 비롯하여 신라상고시대 이래 개인적 실력을 바탕으로 관직을 갖고 그것을 세습시켜 두품신분으로 된 집단들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중고시대 이래 加耶와 百濟·高句麗를 통합하는 과정에 軍功을 세운 신라인과 신라에 항복한 피정복국의 주민들도 일부 두품신분으로 편입되었으나 그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사회적 중요성도 높지 않았다고 해야 하겠다.

그런데 신라중고시대 이래 왕경의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새로운 복속지를 다스리기 위한 필요에서 두품신분자들이 지방으로 이주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十五年 春正月 置小京於阿尸村 秋七月 從六部及南地人戶 充實之(「三國史記」4, 智證王 15년)

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智證王 15년에 설치된 阿尸村小京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확실치 않고 그 설치 목적도 알 수 없고 당시 6부인들만이 그곳에 이주된 것도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小京이 설치되고 그곳에 왕경인이 이주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1)</sup> 이들 왕경인의 신분

71) 「三國史記」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15년조에 나오는 6부인들은 왕경인들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민책은 신라의 지방통치를 위한 것도 있겠으나 왕경의 인구분산책으로서의 효과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을 확인할 길은 없으나 그들 중에 두품신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두품신분자들의 공간적 확대를 뜻하며 지방 거주자의 성격이 복잡해지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일단 소경으로 사민된 두품신분자들은 중앙정제진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믿어진다.<sup>72)</sup> 단지 소경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소경의 사회·정치적 지위에 의하여 소경안에서 일정한 사회·신분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소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한편, 신라중대에 들어서면 정치조직의 확대·발전에 따른 관료제적인 통치체제가 강화되고 왕권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품신분자의 정치적진출이 확대되고 진골의 숫적 증가와 그에 따른 족강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sup>73)</sup> 진골에서 족강할 경우 대체로 6두품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려진다. 이들 족강세력은 그 의식수준도 높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도 컸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같은 6두품이더라도 진골에서 족강된 세력은 일반 6두품과는 다른 성향을 지녔다고 해야 하려진다. 그러나 신라시대에는 아직 이들의 비율도 적었고 왕권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에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여하튼 왕권이 강했던 신라중대에는 왕의 견제에 의해 진골세력이 그 사회·정치적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그들보다 밑의 두품귀족들이 왕의 비호하에 사회·정치적 지위가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두품귀족의 왕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현상일 것이다.<sup>74)</sup>

그러나 신라하대에 이르게 되면 두품신분의 사회·정치적 지위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라하대에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진골귀족의 연합정치가 시행되면서 6두품은 새로이 나타나는 여러 모순을 비판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필자는

72) 強首의 경우는 특별한 예일 것이다.

73) 甘山寺의 彌勒菩薩과 阿彌陀如來 造像記에 나오는 重阿澣 金志誠의 예가 있다.

74) 李基白, 앞의 책, 1974, p. 62.

신라하대 6 두품세력 뿐아니라 5 두품·4 두품 모두 진골귀족에 대하여 반발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6 두품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각이 커진 것도 있고 또 당에 유학을 하여 과거를 통한 출세의 제도를 보고 자극받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sup>75)</sup>

그런데 필자는 그 외에도 신라하대의 골품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 하나는 신라하대 왕위계승전과 관련된 것이다. 신라하대에 여러 차례에 걸친 왕위계승전을 단순히 왕위계승상의 문제가 아니라 골품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즉 왕위계승전에서 패한 귀족들은 제거되거나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때 왕위계승전에는 왕위에 오르려는 진골귀족 외에 그를 추종하는 두품귀족, 지방세력들도 포함되었다. 한편 왕위계승전에서 일단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서는 각급 관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신라하대에는 왕위계승전에서 승리한 왕을 둘러싼 친족들로서 진골신분을 갖고 있던 자들이 종래 두품귀족들이 차지하였다고 믿어지는 하급관직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 모든 하급관직을 진골귀족들이 차지한 것은 아니었고 또 전문적인 실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는 진골도 마음대로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관인 縣令·小守·長史 등의 자리를 왕의 친족들이 차지했던 예로 보아<sup>76)</sup> 특히 지방관직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의 주민을 동원하여 군사적 기반으로 삼고 조세를 거두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진골귀족이 말단 관직의 일부를 차지한 것은 두품귀족들의 자리가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으며, 자연 두품귀족들이 반발하고 나서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다음, 이같은 진골귀족 세력의 득세는 상대적으로 왕에 의지하여 왕의 보호하에 그 세력을 지킬 수 있던 두품귀족의 몰락을 촉진하여 나갔다고 보여지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 결과 두품귀족들은 하대의 왕권에 소

75) 李基白, 앞의 책, 1974, p. 62.

76) 拙稿, 앞의 논문, 1985, pp. 274~275.

극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반항하게 되었다.<sup>77)</sup> 한편 신라하대에는 지방세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張保臯를 중심으로 한 淸海鎮勢力이다.<sup>78)</sup> 물론 그 밖에도 여러 군진세력이 있었지만 청해진세력은 중앙의 왕위계승전에도 참여하여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이는 당시 張保臯가 거느린 청해진의 군사적 세력이 매우 강한데 반하여 국가의 통제력은 미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서 張保臯를 비롯한 지방의 호족세력들은 군사적 지배세력화하여 나가게 되었다.

張保臯는 그후 그의 딸을 文聖王의 妃로 들이려다 중앙귀족의 반발을 받게되고 끝내 암살당하게 되었다. 張保臯의 이같은 중앙정계진출시도는 골품제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중앙의 진골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도 되었다. 그 결과 중앙귀족들이 힘을 합해 張保臯를 암살하게 되었고 이어 청해진세력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지방의 다른 군진세력이 성장하였고 또 각지의 호족세력들이 대두하였으며 낙향귀족들도 붕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라하대말경에 이르게 되면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은 경주일대의 일정 지역만을 다스리는 정도의 세력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과정에 많은 수의 두품귀족들이 지방에서 대두한 군사적 elite로서의 성격을 지닌 여러 호족세력을 도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골품질서를 유지할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두품귀족들도 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학문적 실력을 토대로 지방호족들을 도와 그들이 정치적 성장을 하도록 이념적인 배경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라 골품제하에서는 신분상승 예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신

77) 신라하대 3崔 중 崔致遠은 소극적인 반항을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에 비해 後百濟에서 벼슬한 崔承祐와 高麗의 신하가 되었던 崔仁潁(彦摛)는 적극적인 반항을 한 예가 될 것이다. 崔致遠의 反社會的 性格에 대해서는 申澧植, “宿衛學生考”, 「歷史教育」11·12 合輯, 1969, pp.76~77을 참조할 수 있다.

78) 李基白, 앞의 책, 1974, p.50에서 張保臯가 6두품이었는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하향을 특징으로 하는 신라골품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6 두품에서 5 두품으로, 5 두품에서 4 두품으로, 4 두품에서 卍人(신분)으로 신분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신분하강을 이야기해 주는 자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薛氏집안을 예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sup>79)</sup> 그중 仍皮公—談捺—元曉—薛聰—薛仲業으로 이어지는 薛氏집안을 보면 이들은 분명히 6 두품이 된다.<sup>80)</sup> 그에 비해 寒門單族이었다고 하는 栗里民家の 薛氏女집안은 그 신분이 어떠한 것이었나 궁금하다. 薛氏女와 그의 父는 비록 寒門單族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이 薛氏였던 것으로 보아 平民일 수는 없다하여 6 두품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81)</sup> 그러나 金氏姓을 쓰던 金志誠이 진골이기보다 6 두품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薛氏女와 그의 父 역시 6 두품보다 낮은 신분에 속할 수도 있다. 나아가 생각하면 金氏族·朴氏族을 비롯하여 6 姓을 가진 자들 중에도 그 신분이 족강하여 6 두품·5 두품·4 두품 및 卍人身分까지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 아닐까 짐작이 간다.<sup>82)</sup> 그리고 그와 같은 족강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는 신라하대로 이같이 족강된 세력은 골품제에 대한 불만세력으로 되었다고 헤아려진다.

두품신분자들이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세력 기반을 상실할 때였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 대에 걸쳐 일정가문의 성원이 정치적 진출을 하지 못할 때 그 가계의 세력은 줄어들고 그 신분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계가 방계화될 때 그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점차 정치적 진출도 어려워

79) 李基白, 앞의 책, 1974, pp.39~41 참조.

80) 李基白은 이들 집안을 押督國王族의 후손으로 일찌기 王京으로 이주한 집단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1974, pp.42~44). 그러나 과연 押督國의 후손들이 수세기간 계속 존속하여 나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간다.

81) 李基白, 앞의 책, 1974, p.42.

82) 李基白, 앞의 책, 1974, p.55에서 6 두품으로 다분 孫順도 6 두품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것은 孫氏姓을 가진자들이 6 두품일수는 있으나 그들 중 族降이 된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게 되고 경제적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어 해당 두품신분유지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야겠다.

그런데 신라중고시대 및 중대에는 중앙의 왕이 진골귀족을 통제하고 두품귀족의 지위를 지켜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품귀족들에 대한 통제도 엄격하게 행하였다. 그러한 예는 「三國遺事」 竹旨郎條에 나오는 牟梁部人 益宜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볼 수 있다.<sup>83)</sup> 그에 비하여 두품신분의 변동은 특히 신라하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두품신분 중 불만세력이 증가하면서 왕의 지지세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전제왕권이 무너지고 진골귀족이 대두하는 한 요인으로 되었다고 여겨진다.

## V. 맺 음 말

6 두품·5 두품·4 두품으로 이루어진 두품신분은 성골·진골의 골신분과 平人(百姓)의 일반민의 중간에 위치한 신분집단을 가리킨다. 앞에서 이같은 두품신분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정리하여 보았다. 이제 지금까지 본고에서 알아 본 바를 요약·제시하여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신라두품신분의 기원은 여러 계통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집단은 6부의 토착세력이다. 다음은 신라의 정치·사회조직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두한 집단들이다. 그리고 신라의 정복과정에 왕경으로 사민된 피정복국 출신의 주민들도 있다. 또한 진골에서 족강한 세력도 있다. 이러한 여러 계통의 세력을 토대로 法興王은 율령을 반포하여 골품신분 중 두품신분으로 편제하였다.

두품신분을 분명히 구별하는 장치로는 色服·車騎·器用·屋舍 등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신라인들은 신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나아가 신분의식을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각 두품신분에

83) 「三國遺事」 2, 紀異 2, 孝昭王代 竹旨郎條 참조.

따라 오를 수 있던 관등·관직·관부에도 차이가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신분의식을 유발하였다. 그런데 6 두품·5 두품·4 두품 신분은 자기 그 출신의 기원과 사회·정치적 활동에 차이가 났다. 이러한 두품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는 화랑제도와 국학을 통한 사회화가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한편 두품신분을 가진 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등의 허구적 이동을 시켜주거나 화랑도에 의한 유대관계를 평생 지속시키기도 하였고, 종교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골품제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과 벌의 시행이었다.

두품신분을 가진 자들은 여러 방면에 걸쳐 활동하였다. 그 중 정치적 활동을 보면 6 두품은 최고 관부의 차관이 되거나 2 급관부의 장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은 학문적·종교적 실력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이념을 제공하던 고급관료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6 두품은 병법·음악·문장 등 여러 부문에서 최고 실력을 발휘한 집단이었다. 5 두품은 大舍·舍知職을 차지했고 제 3 급 정도 관부의 장이 되었고 중급기술자, 중급관료가 되었다. 4 두품은 하급 관료, 하급 기술자가 될 수 있었다. 이같은 4 두품도 정책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으나 결정된 정책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적할 수는 있었다. 여하튼 두품신분자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고급기술이나 능력을 보유했고 고급한 관료가 되었다. 이는 나아가 신분에 따라 차지하던 직업이 달랐고 행동양식도 달랐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편 신라중고 시대나 중대에는 중앙의 왕권이 강하여 왕이 진골귀족을 제압하고 두품귀족출신 관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정치적·신분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하대에 들어서면 왕권이 약해지게 되어 두품신분자들의 세력도 축소되었다. 반면 진골귀족의 정치·사회적 대두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신분적인 자각을 하게 된 6 두품을 비롯한 두품신분은 점차 진골귀족의 연합정치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반발하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후백제·고려에서 활약하게 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여하튼 신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두품신분은 소멸되었다.

본고에서는 두품신분의 친족체계, 생활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두품신분과 관련시켜 다루기보다 곁품신분 전반에 걸쳐 정리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이점 앞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사료의 부족과 역사이해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또 다룬 것도 옳게 정리 안되었을 줄 안다. 이점 앞으로 수정·보충할 것을 기약하며 선학의 많은 질정을 기다린다.